

의안번호	2206980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6.8.7.
추 계 번호	24D627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¹⁾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처의 활동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억 6,700만원, 2029년 71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76억 6,800만원(연평균 69억 1,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등)	6,667	6,830	6,999	7,172	27,668	6,9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부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까지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의무규정
2	안 제12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둠	의무규정
3	안 제26조(포상금의 지급)	국가는 친일재산을 발견하여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에게 그 친일재산을 매각하여 취득 또는 환수한 금액의 10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부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까지	○	-
2	안 제12조(사무처의 설치)	○	-
3	안 제26조(포상금의 지급)	×	현 시점에서 신고 건수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예측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및 사무처는 2006년 설치되어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하고 해산되었으며, 이후 관련 소송 및 법적 대응 업무를 법무부가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하고 이후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과거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내역

구분	내용
위원회 활동기간	2006. 7. 13. ~ 2010. 10. 12.
위원회 활동경과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2005.12.29.)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 구성(2006.02.13.)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족(2006.07.13.)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식 조사활동 종료(2010.07.12.)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해산(2010.10.12.)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장관급), 상임위원 2인(차관급), 비상임위원 6인 위원회 직원은 총 107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53명을 충원하고, 자체적으로 54명을 충원하여 구성
사무처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
활동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 소유의 1,139만㎡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당시 공시지가 959억원, 시가 2,106억원)

자료: 법무부 및 위원회의 결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활동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이 위원회 및 사무처를 재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활동을 재개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처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거 위원회가 2006년 설치되어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점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원회 및 사무처 경비의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함²⁾
- 제정안에 따라 활동이 재개되는 위원회 및 사무처는 과거 활동했던 위원회 및 사무처와 동일한 인력 규모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하되, 2025년까지는 실질상승률을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³⁾
- 안 제9조에서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으로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2) 과거 법무부 및 위원회의 결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요 추정

3)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무원임금상승률(2025.1.)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2.0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상승률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1.4	1.7	2.5	3.0	3.5	3.0	3.0	3.0	3.0	3.0

자료: 통계청 및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뉨

- (인건비) 과거에 활동하였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연평균 인건비(20억 1,500만원)에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인건비 지출 내역: 2007~200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연평균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인건비	1,862	2,078	2,105	2,015

자료: 법무부 및 위원회의 결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2026~2029년의 인건비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위원회·사무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3,096	3,188	3,284	3,383	12,9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운영비) 과거에 활동하였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연 평균 운영비(25억 9,900만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표 5]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비 지출 내역: 2007~200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연평균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운영비	2,264	2,784	2,750	2,599

자료: 법무부 및 위원회의 결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2026~2029년의 운영비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위원회·사무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운영비	3,571	3,642	3,715	3,789	14,7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처의 활동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억 6,700만원, 2029년 71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76억 6,800만원(연평균 69억 1,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위원회 설치 및 활동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3,096	3,188	3,284	3,383	-	-
운영비	3,571	3,642	3,715	3,789	-	-
합계	6,667	6,830	6,999	7,172	27,668	6,9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